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만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50
------	-----

2022. 11.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11.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황보연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가.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산업분야별·창업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울의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이 보유한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적 지식, 기업지원 사업의 수행 경험, 기업·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나. 위탁기간 : 2023년 3월~2024년 12월(1년 10개월)

다. 소요예산 : 778백만원(2023년 예산안)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내용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입주기업 관리, 시설운영
 - 입주기업 모집·선정 및 관리, 시설전반 운영 및 안전관리
- 초기 창업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 회계·경영·법무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멘토링 진행
- 마케팅·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
 - 투자사,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 및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
- 블록체인 특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 블록체인 기업 대상 기술전문가 매칭 상담, 기술사업화 지원

- 블록체인 분야 재직자, 예비창업자, 학생 등 대상 블록체인 전문 교육
 - 정부·민간 등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 수집·안내 및 사업참여 지원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성과관리
 - 입주기업 매출,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주요성과 분석
 - 시설 및 지원사업 만족도, 이용현황 등 운영성과 관리
- 바. 시설위치 :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층·11층(2개층, 2,014㎡)
- 사.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산업생태계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요하는 사업으로
 -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민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2.10.6)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의 신규 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조성 현황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이하 “제2핀테크랩”)은 아시아 금융중심 도시 도약을 목적으로 핀테크·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개관 예정임.
 -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라운지, 교육장 및 회의실, 유관 기관·VC²⁾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파트너존 등으로 구성됨.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Venture Capital의 약자로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형태로 투자하는 전문적인 금융 기관이나 자본을 말함.

- 현재 입주기업 모집 중에 있으며 12월 개관 후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통해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예정임.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사업개요 >



- 시설명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 위치 :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11층
- 규모 : 2,014㎡(2개층, 8층 1,007㎡ / 11층 1,007㎡)
- 주요사업: 핀테크·블록체인 초기스타트업 입주공간 제공, 초기 스타트업 경영안정화, 투자유치·마케팅지원, 블록체인 특화 지원 사업 등
- 공간구성: 입주기업공간 25, 파트너존 5, 회의실15, 멤버십존 16석 등

- 제2핀테크랩은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 기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조성됨.
- 핀테크랩 시설은 지원대상과 기능을 분담해 운영할 예정으로 제2핀테크랩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수익화 모델개발 등을 지원하고, 서울핀테크랩은 7년 이내 유망 핀테크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

〈 서울핀테크랩과 제2핀테크(블록체인)랩 비교표 〉

구 분	서울핀테크랩 - 여의도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 마포
운영방식	민간위탁(그라운드업벤처스 주식회사)	용역계약으로 시범운영(2022.10~ 2023. 2) 후 민간위탁사업 전환(2023. 3~)
2022년 예산	7,640백만원 (민간위탁 1,640, 임대료 등 6,000)	637백만원 (공사 227 운영 390 임대료 20)
지원대상	유망 핀테크 창업기업(창업 7년이내)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초기 창업기업
입주기업 선발기준	① 창업 7년이내 ② 1억원 이상 투자유치 ③ 매출 1억원 이상(최근 3년간 누적) ④ 직원 5인 이상 (①필수 + ②~④ 중 2개 이상 충족)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
입주현황	82개사(국내 73개사, 해외 9개사)	25개사 내외(예정)
주요사업	-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및 연장 평가 - 법률·규제·인사 등 멘토링 및 실무교육 - 데모데이, 마케팅 진단 등 투자유치 지원 - 피노베이션 챌린지 등 금융·타분야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 입주기업 모집 및 공간제공 -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 - 비즈니스모델 개발, 투자유치, 기술발 및 사업화,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마케팅 - 블록체인 특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는 제2핀테크랩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 메타버스³⁾, NFT⁴⁾, 가상화폐 등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산업은 높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분야로

3)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아바타를 활용해 실제 현실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4)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이다.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서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즉,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

초기 공공영역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이 필요함.

- 또한,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초창기 창업지원(제2핀테크랩)과 성장단계 기업(서울핀테크랩)의 글로벌 투자유치, 해외 시장 비즈니스 진입 등 연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핀테크랩 운영사무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법인·단체 등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제2핀테크랩 조성 공간은 올해 6월말까지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2020년 개관)가 운영되던 곳으로 기존 입주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관 결정과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존 창업기업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는 2021년도 6월까지도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11월 제2핀테크랩 조성이 계획되면서 폐관이 결정됨.
 - 2021년 말까지 입주 중이던 32개사 중 28개사의 입주기간을 폐관일 (2022.6.)까지 연장했으나, 센터 폐관 이후 모두 퇴거 조치됨.

<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입주기간 연장 현황 >

구분	기업수	당초 입주기간	연장 입주기간	총입주기간
1기	12개사	'20.1.1.~'21.12.31	'20.1.1.~'22.6.30	2년6개월
2기	7개사	'20.5.1.~'22.4.30	'20.5.1.~'22.6.30	2년2개월
	1개사	'20.5.1.~'22.5.30	'20.5.1.~'22.6.30	2년2개월
3기	2개사	'21.1.1.~'21.12.31	'21.1.1~'22.6.30	1년6개월
파트너사	1개사	'21.1.1.~'21.12.31	'21.1.1~'22.6.30	1년6개월
4기	4개사	'21.5.1.~'22.4.30	'20.5.1.~'22.6.30	1년2개월
	1개사	'21.6.1.~'22.5.30	'21.6.1~'22.6.30	1년1개월

- 서울시 핵심사업의 급격한 존폐결정은 매몰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공신력 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지양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0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산업분야별·창업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울의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이 보유한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적 지식, 기업지원 사업의 수행경험, 기업·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 나. 위탁기간 : 2023.3월~2024.12월(1년 10개월)
- 다. 소요예산 : 778백만원('23년 예산안)
-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마. 위탁사무내용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입주기업 관리, 시설운영
 - 입주기업 모집·선정 및 관리, 시설전반 운영 및 안전관리

- 초기 창업기업 경영안정화 지원
 - 회계·경영·법무·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멘토링 진행
- 마케팅·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
 - 투자사, 금융기관 등과의 협업 및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
- 블록체인 특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 블록체인 기업 대상 기술전문가 매칭 상담, 기술사업화 지원
 - 블록체인 분야 재직자, 예비창업자, 학생 등 대상 블록체인 전문교육
 - 정부·민간 등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 수집·안내 및 사업참여 지원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성과관리
 - 입주기업 매출,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주요성과 분석
 - 시설 및 지원사업 만족도, 이용현황 등 운영성과 관리

바. 시설위치 :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층·11층(2개층, 2,014m²)

사.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산업생태계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요하는 사업으로
 -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민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2.10.6)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금융투자과 디지털금융팀 오혁준 (☎ 2133-5240)
최나현 (☎ 2133-5241)